

광업·제조업조사 주요 용어 해설

개인사업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혼자 소유·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광업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록)를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단위이다. 1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된다.
내용연수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보통의 상태 및 조건 하에서 통상의 수리를 전제로 하여 그 자산이 폐물로 되어 파기될 때까지의 이용기간 또는 사용예정기간을 의미한다.
매출액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 및 에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말한다. 매출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상품을 인도한 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에 실현된 것으로 계상하나 예외적으로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미완성공사는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실현된 것으로 계상할 수 있다.
매출원가	매출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이나 구매과정에서 발생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액 및 기타 경비를 말한다. ▶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 해당된다.
비법인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법인이 아닌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 아닌 교회 및 암자 등이다. ▶ 단체의 성격이 같은 동창회, 종교기관이라 하더라도 회사이외법인과 비법인 단체의 구분은 법적으로 법인등록여부에 따른다.
비표본오차	기입 등 실사단계 또는 집계, 정리 단계의 잘못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이다. ▶ 조사방법차이, 설문문안의 모호성, 감정적인 단어 사용, 질문순서, 면접시간 길이, 무응답 등
사업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 사업체의 판단에 영리·비영리, 적법·위법여부는 관계없음. ▶ 1개의 기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각각의 사업체가 된다.
산업분류	생산주체들이 수행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 통계청에서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 2017년 고시된 제10차 개정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4차 개정분 국제표준 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p>상용근로자</p>	<p>임금근로자 중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이 없으나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가 아니다. ▶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계약의 형태가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상용근로자이다.
<p>생산액</p>	<p>판매(출하), 재고 증감 및 상품과 서비스의 전매(재판매)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것으로 사업체가 실제 생산한 금액으로 측정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 임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한다.
<p>소사장제</p>	<p>소사장제는 일반적으로 생산직 간부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해 부품을 생산하게 하는 일종의 도급생산 방식으로 최근 중소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신경영기법이다. 모기업은 소사장에게 생산현장에 작업장과 생산설비를 설치해 주며, 생산인력 충원을 제외한 관리·판매·기타 대외업무를 모두 떠맡긴다. 따라서 독립을 원하는 직원이 별도의 장소에서 하청법인을 설립토록 지원해 부품을 공급받는「협력업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종 협업형태다.</p>
<p>영업외수익</p>	<p>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수익 이외의 수익. 기업회계기준(78조)에는 영업외수익을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수익 중 특별이익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수입(受入)이자와 할인료, 유가증권이자, 수입배당금, 주식배당액,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원가차익(差益), 수입임대로, 유가증권 처분이익, 매입할인, 외환차익(外換差益), 외화환산이익, 잡수입 등이다. 특히 관계회사에 대한 대부금의 이자 또는 지주(持株)에 의한 배당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p>
<p>유형자산</p>	<p>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등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p> <p>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등 비상각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되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 누계액이 차감된 순액으로 표시된다.</p>
<p>일용근로자</p>	<p>임금근로자중 사업체와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 대가를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로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노무자, 행사도우미, 파출부 등 그때그때 일을 얻거나 호출되어 일을 수행하여 일급 또는 일당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된다.
<p>임금</p>	<p>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로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으로 정상 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지급액 ▶ 초과급여 : 정상근로시간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로서 상여금, 기말수당,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산정·지급되는 수당 등
<p>임금근로자</p>	<p>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p>
<p>임시근로자</p>	<p>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이 없으나 1개월~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같은 사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람이 해당된다.</p>

재고액	<p>조사기준일 현재 그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평가액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재고액은 1월 1일 현재, 연말재고액은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의 사업장내 실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연료의 재고액을 말한다. ▶ 재고품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하며,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 연말의 시가에 의한 추정액으로 함.
제조업	<p>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상품을 선별·분리·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출하	<p>생산된 제품이 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업체에서 출고되는 것을 의미하며,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된다. 사업체에서 출고된 것을 출하로 간주하며, 판매대금을 받았더라도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출하로 보지 않는다.</p>
회사법인	<p>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회사법인에 해당된다. ▶ 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도 회사법인에 포함된다.
회사이외법인	<p>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인, 민간의료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 정부투자기관(공사, 지방공사, 공단 등) ▶ 조직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 농·림·수·축산업 협동조합(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사회복지 법인, 공제조합 등
행정구역분류	<p>전국의 행정구역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호화하여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지역자료를 분류, 집계하는 것으로, 지역 간 통계조사의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류이다.</p>